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배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0724

발의연월일: 2021. 6. 9.

발 의 자:김영배·강민정·김민철

서영교・설 훈・송재호

오영환 · 윤준병 · 이병훈

한병도 의원(10인)

제안이유

선거를 통한 국민의 참여는 대의제 민주주의의 필수적인 요건으로, 주권자인 국민이 자신의 정치적 의사를 결정하고 표명함으로써 선거 과정에 참여하는 행위는 자유롭게 행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보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따라 현행 「공직선거법」은 1994년 제정 당시부터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을 원칙으로 하면서 예외적인 경우에만 이를 제한·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개별 규정을 통해 선거운동행위별로 그 주체와 방법 등을 한정함으로써 선거운동의 자유를 광범위하게 제한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특히 2020년 12월 29일 법률 개정으로 온라인은 물론 전화와 말로하는 선거운동에 대한 규제가 완화된 상황에서도, 시설물·인쇄물에 대하여는 선거운동뿐만 아니라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까지 폭넓

게 금지하여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비판과 함께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이에 투표참여 권유활동과 소품을 이용한 선거운동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는 한편, 시설물과 인쇄물을 이용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 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국민의 정치적 활동을 보장하려 는 것임.

주요내용

- 가.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하거 나 시설물·인쇄물·녹음기·녹화기 등 표시물을 사용하여 투표참 여 권유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함(안 제58조의2제3호 및 제4호 삭제 등).
- 나. 후보자와 그 배우자 및 선거사무관계자 등에 한하여 할 수 있던 어깨띠 등 소품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누구든지 할 수 있도록 허용함(안 제68조제1항).
- 다.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광고시설을 설치하거나 표시물을 배부하거나 상징물을 판매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함(안 제90조 삭제 등).
- 라.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

테이프 등을 배부·상영·게시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함(안 제93조제1항 삭제 등).

법률 제 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의2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68조제1항 중 "후보자와 그 배우자(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 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을 포함한다),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 거사무원,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활동보조인 및 회계책임자는"을 "선 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로 한다.

제90조를 삭제한다.

제93조제1항을 삭제한다.

제230조제1항제6호 중 "성명을 나타내거나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으로"를 "성명을 나타내어"로 한다.

제255조제2항제5호 중 "第93條(脫法方法에 의한 文書·圖畵의 배부· 게시 등 금지)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文書·圖畵 등을 배부·첩부· 살포·게시·상영하거나 하게 한 者, 같은 條第2項의 規定"을 "제93조 제2항"으로 한다.

제256조제3항제1호아목을 삭제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8조의2(투표참여 권유활동) 누	제58조의2(투표참여 권유활동)									
구든지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	<u><삭 제></u>									
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										
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하는 경우										
4. 현수막 등 시설물, 인쇄물,	<u><삭 제></u>									
확성장치·녹음기·녹화기										
(비디오 및 오디오 기기를										
포함한다), 어깨띠, 표찰, 그										
밖의 표시물을 사용하여 하										
는 경우(정당의 명칭이나 후										
보자의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										
는 내용을 나타내어 하는 경										
우에 한정한다)										
제68조(어깨띠 등 소품) ① 후보	제68조(어깨띠 등 소품) ① 선거									

자와 그 배우자(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 중 에서 신고한 1인을 포함한다),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 거사무원, 후보자와 함께 다니 는 활동보조인 및 회계책임자 는 선거운동기간 중 후보자의 사진 · 성명 · 기호 및 소속 정 당명, 그 밖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어깨띠나 중앙 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 는 규격 또는 금액 범위의 윗 旗) · 마스코트, 그 밖의 소품을 붙이거나 입거나 지니고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제90조(시설물설치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보 궐선거등에서는 그 선거의 실 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 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 위를 할 수 없다. 이 경우 정당

운동을 형	할 수	있는	사람은	누
<u> 구든지</u>				
		- — — — — ·		
2 • 3 (현행고	구 같음	·)	
<u><</u> 삭 제:	>			

(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의 명칭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 려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성명·사진 또 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한 것은 선거 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본다.

- 1. 화환·풍선·간판·현수막· 애드벌룬·기구류 또는 선전 탑, 그 밖의 광고물이나 광고 시설을 설치·진열·게시· 배부하는 행위
- 2. 표찰이나 그 밖의 표시물을

 착용 또는 배부하는 행위
- 3. 후보자를 상징하는 인형·마 스코트 등 상징물을 제작· 판매하는 행위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행위로 보지 아니한 다.
- 1.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행하는 「정당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통상적인 정당활동

2. 의례적이거나 직무상·업무 상의 행위 또는 통상적인 정 당활동으로서 중앙선거관리 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행위 第93條(脫法方法에 의한 文書・ 第93條(脫法方法에 의한 文書・ 圖畵의 배부・게시 등 금지) ① 누구든지 選擧日전 180日 | <삭 제> (補闕選擧 등에 있어서는 그 選擧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 부터 選擧日까지 選擧에 영향 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法 의 規定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政黨(創黨準備委員會와 政黨의 政綱・정책을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 또는 候補者 (候補者가 되고자 하는 者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 다)를 支持・추천하거나 反對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政黨의 명칭 또는 候補者의 姓 名을 나타내는 廣告, 人事狀, 壁報, 사진, 文書・圖畵, 印刷物 이나 錄音・錄畵테이프 그 밖 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 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圖畵의 배부·게시 등 금지)

- <u>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u>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선거운동기간 중 후보자, 제 60조의3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같은 항 제2호의 경우 선거연락소 장을 포함하며, 이 경우 "예 비후보자"는 "후보자"로 본 다)이 제60조의3제1항제2호 에 따른 후보자의 명함을 직접 주는 행위
- 2.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행하

 는 「정당법」 제37조제2항

 에 따른 통상적인 정당활동
- ②・③ (생 략)
-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 ① 저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처한다.
 - 1. ~ 5. (생략)
 - 6.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후 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 한다)의 성명을 나타내거나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제58조의2에

②·③ (현행과 같음)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	1
1. ~ 5. (현행과 같음)	
6	
<u>성명을</u> 나타내어	

따른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를 하게 하고 그 대가로 금품, 그 밖에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자 7. (생 략)

② ~ ⑧ (생 략)

第255條(不正選擧運動罪) ① (생략)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者는 2年 이하의 懲 役 또는 400萬원 이하의 罰金 에 處한다.
- 1. ~ 4. (생 략)
- 5. 第93條(脫法方法에 의한 文書・圖畵의 배부・게시 등 금지)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文書・圖畵 등을 배부・ 첨부・살포・게시・상영하거나 하게 한 者, 같은 條第2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廣告 또는 出演을 하거나 하게 한者 또는 第3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身分證明書・文書 기타 印刷物을 發給・배부 또는 徵求하거나 하게 한者

7. (현행과 같음) ② ~ ⑧ (현행과 같음)
第255條(不正選擧運動罪) ① (현
행과 같음)
②
 1. ~ 4. (현행과 같음)
5. <u>제93조제2항</u>

- 6. ~ 8. (생략)
- ③ ~ ⑤ (생 략)
- 제256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 ① 제256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 ① · ② (생 략)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③ -----해당하는 者는 2年 이하의 懲 役 또는 400萬원 이하의 罰金 에 處한다.
 - 1. 選擧運動과 관련하여 다음 1.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者

가. ~ 사. (생 략)

아. 第90條(施設物設置 등의 <삭 제> 금지)의 規定에 위반하여 宣傳物을 設置・진열・게 시 · 배부하거나 하게 한 者 또는 상징물을 제작・ 販賣하거나 하게 한 者

자. ~ 너. (생 략)

- 2. ~ 4. (생략)
- ④·⑤ (생 략)

- 6. ~ 8. (현행과 같음)
- ③ ~ ⑤ (현행과 같음)
- · ② (현행과 같음)

O									
	 	 	 	 	 	 	_	 	_
	 	 	 	 	 	 	_	 	_

가. ~ 사. (현행과 같음)

자. ~ 너. (현행과 같음) 2. ~ 4. (현행과 같음)

④·⑤ (현행과 같음)